



홈페이지 : [www.directcoffee.co.kr](http://www.directcoffee.co.kr)

이메일 : [directcoffee@d-tech.kr](mailto:directcoffee@d-tech.kr)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2025028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5년 03월 10일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년 03월 10일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 정보공개서

다이렉트커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다이렉트커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 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0. 101 호(주엽동, 씨엘빌딩)

[대표 전화번호] 1555-2524

[대표 팩스번호] 031-983-9068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창원지원팀 031-983-814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 일반정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상호      | 사용 브랜드         | 주 소                        |          |              |              |
|---------|----------------|----------------------------|----------|--------------|--------------|
| 다이렉트 커피 | 다이렉트커피<br>생활카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30<br>101호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 전화        | 대표 팩스        |
|         | -              | 2024.01.15                 | 김민규, 이근선 | 1555-2524    | 031-983-9068 |
|         | 법인 등록번호        | -                          | 사업자 등록번호 | 399-17-02207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
|-------|----------------|----------------|--------------------------|-----------|--------------|
| 공동 대표 | 김민규/<br>다이렉트커피 | 다이렉트커피<br>생활카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30. 101호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김민규, 이근선                 | 1555-2524 | 031-983-9068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
| 공동 대표 | 이근선/<br>다이렉트커피 | 다이렉트커피<br>생활카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30. 101호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김민규, 이근선                 | 1555-2524 | 031-983-9068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
| 계열회사  |                |                |                          |           |              |
|       |                |                |                          |           |              |
|       |                |                |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소                       |           |              |
| 계열회사  |                |                |                          |           |              |
|       |                |                |                          |           |              |
|       |                |                |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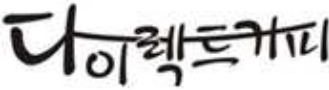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브랜드 | 인수/합병일 | 주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해당없음 | -   | -      | -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해당없음 | -   | -      |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해당없음 | -   | -      | -  | -   |

※ 2025년 다이렉트커피의 법인 전환 예정으로 대표자 개인이 운영했던 가맹본사를 법인으로 흡수하여 당사의 법인명의로 책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분           | 내용                                                                                  | 추가설명                  |
|--------------|-------------------------------------------------------------------------------------|-----------------------|
| 명칭           |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        |
| 상호           |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OO점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명           |
| 상표<br>(서비스표) |    | 등록번호<br>4022342730000 |
|              |    | 출원번호<br>4020230222381 |
|              |    | 출원번호<br>4020240219401 |
|              |   | 출원번호<br>4020250010648 |
|              |  | 출원번호<br>4020250011379 |

※ 당사의 상표, 간판, 마크, 로고 등 영업표지에 대한 변경은 당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2년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2024년 | -    | -    | -    | 62,627 | -    | -     |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액의 근거자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합니다.

2)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br>여부       | 이름  | 현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br>사업<br>관련 | 김민규 | 공동대표 | 2024.01.15~현재 | 다이렉트커피 대표 | 회사업무 총괄 |
|                | 이근선 | 공동대표 | 2024.01.15~현재 | 다이렉트커피 대표 | 회사업무 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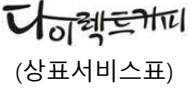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4년 12월 31일 | 2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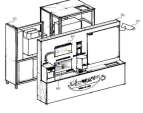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이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br>일<br>(가맹사업부의<br>이용기간) |
|-------------------------------------------------------------------------------------------------|------------------|------------------------------|--------------------------------------------|----------------|----------------------------------|
| <br>(상표서비스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3.12.06출원<br>2024.08.13등록 | 출원<br>4020230222377<br>등록<br>4022342730000 | 디티씨(주)         | 2034.08.13                       |
| <br>(상표서비스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3.12.06출원                 | 출원<br>4020230222381                        | 디티씨(주)         |                                  |
| <br>(상표서비스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4.11.28출원                 | 출원<br>4020240219401                        | 디티씨(주)         |                                  |
| <br>(상표서비스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5.01.20출원                 | 출원<br>4020250010648                        | 디티씨(주)         |                                  |
| <br>(상표서비스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5.01.21출원                 | 출원<br>4020250011379                        | 디티씨(주)         |                                  |

|                                                                                             |                  |              |                     |      |  |
|---------------------------------------------------------------------------------------------|------------------|--------------|---------------------|------|--|
| <br>(특허등록표) | 가맹점<br>운영에<br>한함 | 2024.09.10출원 | 출원<br>1020240123516 | 디티씨㈜ |  |
|---------------------------------------------------------------------------------------------|------------------|--------------|---------------------|------|--|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권)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당사의 상표(특허)의 사용 범위는 해당 점포 소재지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당사는 디티씨㈜와의 특허, 상표권 사용 허락 계약을 통해 특허 및 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Ⅱ. 가맹본부의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 현황

### 1.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의 최초가맹점영업이 시작한날: 가맹사업 준비 중

### 2.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연혁

| 가맹본부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br>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다이렉트커피 | 다이렉트커피<br>생활카페 | 김민규<br>이근선 | 준비 중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br>강선로30. 101호 |
|        |                |            |            |                             |

※ 당사는 2024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대표: 김민규, 이근선)로 [다이렉트커피]라는 영업표지로 직영점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3.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다이렉트커피<br>생활카페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커피  | 커피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2.12.31 |      |      | 2023.12.31 |      |      | 2024.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2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

※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를 뜻함

※ 계약해지: 가맹본부와 합의를 거쳐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를 뜻함

※ 명의변경: 가맹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를 뜻함

6.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외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  
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별 가맹점 점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 지역 | 2024년말<br>가맹점수 |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
|----|----------------|-------------------------|-------------|--------------|-------------|--------------|-------------|------|
|    |                | 연간 평균매출액                |             | 연간 평균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매출액(하한) |             |      |
|    |                | 연간<br>평균매출액             | 면적<br>3.3㎡당 | 상한           | 면적<br>3.3㎡당 | 하한           | 면적<br>3.3㎡당 |      |
| 전체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서울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부산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대구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인천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광주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대전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울산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세종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경기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강원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충북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충남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전북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전남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경남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제주 | - | - | - | - | - | - | - | 해당없음 |

※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습니다.

#### 8.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단위 : 일) |
|------|------------|-----------------|
| 2024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별도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수 단   | 기 간                   | 지출비용 |      |     | 비 고 |
|-----|-------|-----------------------|------|------|-----|-----|
|     |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 합계  |       | 2024.01.01~2024.12.31 |      |      |     |     |
| 광고  | 광고.홍보 | 2024.01.01~2024.12.31 |      |      |     |     |
| 판촉  | 판촉    | 2024.01.01~2024.12.31 |      |      |     |     |

※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지점            | 전화번호         |
|---------|---------------|--------------|
| 기업은행    | 일산주엽점 포함 전 지점 | 031-922-3204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상세내용                                                                      |
|---------|---------------------------------------------------------------------------|
| 은행지점 방문 | 1)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수령 -> 2) 은행방문 후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예치 -> 가맹금예치증서 수령 및 보관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
|------------------------------------------------------------------------------------------------------------------------------------------------------------------------------------------|
| <b>1.</b>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 <b>2.</b>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br>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br>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br>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 <b>3.</b>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br>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
|---------------------------------------------------------------------------------------------------------------------------------------------------------------------------------------------------------------------------------------|---------------------|
| <p><b>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b></p> <p>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p>                                       | <p>해당 사항<br/>없음</p> |
| <p><b>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b></p> <p>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와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p> | <p>해당 사항<br/>없음</p> |
| <p><b>3. 형(刑)의 선고</b></p> <p>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p>                                                                                                           | <p>해당 사항<br/>없음</p>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관련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지역/위치/규모, 건물의 상태 및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3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대상       | 예치 여부   | 비고(금액)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전액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점포면적/구조, 사용설비 등에 따라 상이 |

1)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2,200 | 계약체결과<br>동시 | 가맹사업법에<br>따름 | 가맹점 모집을<br>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반환 시<br>양 당사자의<br>약정에 따라 결정 |
| 교육비 | 1,100 |             | 교육 미 시행      | 교육시행                   |                             |

2)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현금)<br>보증금 | 2,000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본부 및 관계회사에 대한 미지<br>급금, 본부 대여물품 파손 등 |    |

##### 3)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
|---------|---------------------|
| 가맹비     | 2,200               |
| 교육비     | 1,100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 총액      | 5,300               |

#### 4)기타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기준평수㎡ 33㎡[약10평])

| 구분         | 지급대상자 | 금액     | 3.3㎡당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인테리어       | 협력업체  | 20,042 | 2,004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이전 | 공사 전 계약 취소 | 기준면적 이하는 기준면적 적용                           |
| 가구 등       | 협력업체  | 9,786  | -        | 설치 3일 이전         | 설치 전 계약 취소 | 실내가구, 음향시설, cctc, 액자, IOT시스템, 싱크 및 창고 가구 등 |
| 간판, 어닝 등   | 협력업체  | 4,559  | -        | 내부 인테리어 공사완료 이전  | 공사 전 계약취소  | 수동어닝 (3,500X2SET)<br>메인간판, 돌출간판 등          |
| 자동화 커피머신   | 협력업체  | 42,900 | -        | 설치 3일 이전         | 설치 전 계약취소  | 렌탈 가능                                      |
| 초도물품 (식재료) | 가맹본부  | 1,874  | -        | 물품 공급 3일 이전      | 상품 미 공급시   | 원두, 파우더 외 식재료 및 비품                         |
| 총계         |       | 79,162 |          |                  |            |                                            |

※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공사 시 시공면적은 최소 10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10평 미만 공사의 경우)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점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평형대라도 점포 형태에 따라(건물형태, 현장상황, 노후정도, 품목 및 수량, 외장 및 내부오피스공사, 1차 설비-전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이 위 면적당 금액에 해당 매장의 면적을 곱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 별도 비용 : 철거, 소방, 냉난방기, 전기증설, 샷시, 가스, 정화조, 화장실, 외부상하수도, 외장추가, 간판추가, 내부 포스터 외 홍보물, 선택사항 전자제품(냉동고, 식기세척기, 청소기, 디저트 냉장고) 등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하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가 당사에 제시하는 디자인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합니다. 그 대가로 3.3㎡ 기준으로 [330]천원(부가세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5)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을 통한 알선을 하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포의 입지선정과 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있으며 당사의 위치제안은 참고용 자료이며 매출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br>또는<br>가맹사업자 | <p>상담을 통한 예산파악 -&gt;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가맹본사 위치 제안<br/>-&gt;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장 분석(희망 지역이 없는 경우 가맹본사에서 위치제안) -&gt; 최적 입지 도출 -&gt; 가맹희망자에게 동의확인</p> <p>*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p> |

#### 6)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교육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p>-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br/>-만 19세 이상일 것<br/>-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p>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p>-만 18세 이상일 것<br/>-향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취득 가능자</p>                           |

※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는 타 브랜드 모방의 우려로 지정인 외 매장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 인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작성 및 가맹본사 직원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 스테프실 내부는 가맹사업자 외 지정 2인(종업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가맹본사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7)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                                                                  |
|-------------------------------------------------------------------------------------|------------------------------------------------------------------|
|  | <p><b>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b></p> |
|-------------------------------------------------------------------------------------|------------------------------------------------------------------|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 구 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수 없는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110 | 월1회     | 목표 매출 미 달성 시 (3,000) | 목표 매출 달성 (3,000) | 계좌CMS신청 대금 기준     |
| 일 시스템 관리비용  | 가맹본부   | 55  | 일1회     | 미 수행 시               | 관리 완료            | 계좌CMS신청 대금 기준     |
| 월 시스템 관리비용  | 가맹본부   | 220 | 월1회     | 일할계산 후 차액반환          | 월 기사용분           | 계좌CMS신청 대금 기준     |
| 자동화 커피머신 수리 | 가맹본부   | 실비  | 수리 완료 시 | 수리 불가 시              | 수리 완료            | 보증기간 이후 (보증기간 1년) |
| 월세 및 관리비    | 상가 사업자 | 협의  | 협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             |       |                    |
|--------------------------|-----------|----------------------------------------------------------------------------------------------------|---------------|-------------|-------|--------------------|
| 통신료                      | 통신<br>사업자 | 협의                                                                                                 | 협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세무<br>대행비                | 세무<br>사업자 | 협의                                                                                                 | 협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자동화<br>커피머신<br>렌탈료       | 가맹본부      | 이자율은 5% ~ 15% 내외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br>※ 선납금 20%/30%40%/50% 선택 가능<br>※ 36개월,48개월 분할 납부 조건 선택 가능 |               |             |       |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당사<br>기준                                                                                           | 통지 후<br>7일 이내 | 미 시행 시      | 시행    | 9.광고 및 판촉<br>활동 참조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행사<br>기준                                                                                           | 통지 후<br>7일 이내 | 미 시행 시      | 시행    | 9.광고 및 판촉<br>활동 참조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br>청구                                                                                           | 교육실시<br>10일 전 | 미 시행 시      | 시행    | 교육 필요 시<br>지급      |
| 간판변경비                    | 협력<br>업체  | 당사<br>기준                                                                                           | 당사<br>기준      |             |       |                    |
| 인테리어,<br>시설 등 환경<br>개선비용 | 협력<br>업체  | 당사<br>기준                                                                                           | 당사<br>기준      |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미지급액<br>X<br>연[15]%                                                                                | 지급기억<br>익일부터  | 후불로<br>반환없음 |       |                    |

※ 해당 렌탈 비용은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거절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시점의 렌탈사 기준에 따른다.

※ 렌탈에 발생하는 월 관리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자동화 커피머신 수리」는 보증기간(1년) 만료 후 발생하는 수리에 대한 항목이며, 보증기간 내 가맹사업자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별도 수리비를 실비 청구합니다.

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가 불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동, 낙하, 충격, 무리한 동작 등으로 발생한 고장
- 2) 다이렉트커피 직원 외 일반인이 제품을 분해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3) 화재, 지진, 수해, 낙뢰, 이상 전원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급, 배수관의 동파 및 막힘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5) 초기 셋팅을 임의로 변경하고, 가맹본부에서 취급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6) 제품 이동으로 인하여 재 설치하는 경우

※ 「통신료」항목은 필수 사항이며 통신 회사는 가맹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행비」항목은 선택 사항이며 가맹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 시스템 관리비용」의 관리 범위 (오류항목에 대한 처리 사항은 실시간 문자 전송)

- 1) 고객과의 모든 유선연락은 본사 대응 (주간 & 야간 365일 24시간 대응)
- 2) 컵 걸림에 따른 대처

- 3) 환불 대응 (오류에 따른 환불 처리, 일 2건이상 기계 오류 발생시 해당 메뉴 SOLD OUT으로 변경하며 24시간 이내 커피머신 방문 점검 실시)
- 4) 커피머신 A/S 필요시 점주님께 실시간 유선연락 (A/S 1년 무상, 1년 후 유상)
- 5) 커피머신 작동 오류 (키오스크 멈춤현상, 기계오류등)
- 6) 급한일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세척 및 재료 충전을 못하는 경우 본사 대응 (최대 월1회)

※ 「일 시스템 관리비용」의 관리 범위

- 1) 「월 시스템 관리비용」의 전체 항목
- 2)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재료 충전, 청소 서비스 (재료는 매장 비치된 재료 사용)
- 3) 기타 문제점 발생시 대응

※ 「로열티」항목은 월 매출 3,000,000원 미만시 반환됩니다.

※ 「광고분담금」, 「판촉분담금」, 「교육훈련비」 항목은 일정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 시 사전통지를 하고,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간판변경」,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항목은 보증기간(1년) 만료 후 가맹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하며 실비 수준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 2)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 당사의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운영 중인 가맹점이 없습니다. 이에 2024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 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관련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후의 부담

### 1)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 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수<br>없는사유 | 비고 |
|------------|------|------|------|------|--------------|----|
| 재계약<br>가맹비 | 가맹본부 | 해당없음 |      |      |              |    |

※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당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매장의 인테리어 및 설비의 사용기한은 각 매장의 최초 개점일(가맹계약서 표지의 기재일)로부터 2년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테리어 및 설비가 지극히 불량하여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리뉴얼, 보수,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 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및 설비의 종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업체에 의뢰하여 인테리어 및 주방기기, 기타 설비의 보수에 따른 비용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인테리어 리뉴얼 시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합니다. 또한, 매뉴얼에 의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의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을 진행합니다.

## 2)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 수취하는 경우 반환청구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나)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 및 당사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영업표지 및 그에 따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경영 또는 홍보상의 이유 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새로운 영업표지 및 상호가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단, 기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간판이나 내·외부 POP 등의 부착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약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영업표지로 매장의 간판이나 내·외부 POP 등 부착물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당사 비용으로 이를 교체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나 권리의 미 확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가맹사업 상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제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다)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미 수취하는 경우 반환청구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3)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7.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있습니다.

#### 4)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종료 후의 조치                                                                                                                                                                                                                                                                                                                                                                                                                                                                                                                                                                                                                                                                                                 | 관련 계약조문 |
|------------------------------------------------------------------------------------------------------------------------------------------------------------------------------------------------------------------------------------------------------------------------------------------------------------------------------------------------------------------------------------------------------------------------------------------------------------------------------------------------------------------------------------------------------------------------------------------------------------------------------------------------------------------------------------------------------------|---------|
| <p>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서 제8조에 정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상실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①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②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POS 시스템, 광고물, 고객들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신용정보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별첨2]에 따라 자동화 커피머신 등 영업관련 자산을 반환한다. 또한, 가맹본부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p> <p>③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규정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철거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시설물 철거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가맹본부는 제1항 및 제2항 모든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한 후 최대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 53조     |

⑤이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이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설비·용역 및 원·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상세내용은 <별첨 3>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별첨 4><br>참조 | 가맹본부에서 정한 메뉴 외에는<br>추가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없음<br>메뉴 레시피를 무단 변경도 금지됨 | 1회 위반 : 구두 경고<br>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br>요구 및 미 시정시 계약 해지 | 2025.01<br>기준 |

※ 귀하가 위 표에 표시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려고 하거나, 위에 표시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아래 표에 기재된 메뉴를 삭제할 수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2)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다른 가맹점사업자<br>등 소비자 외 제3자 | <별첨 2><br>참조 | 거래상대방별로<br>기재된 제품은<br>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 경고<br>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br>요구 및 미 시정시 계약 해지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3)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

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메뉴명       | 권장가격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별첨 4> 참조 | -    |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br>쇼핑몰공지 및 물류배송 시 서면안내 | 2025.01월<br>기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중저가의 커피 전문점 |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 해당없음 |

##### 2)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점포를 중심으로<br>반경 300m | 원칙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300m로 하되, 실제로는 상권 등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에 별첨되는 지도에 표시된 영업지역이 우선하도록 함. 예를 들면 인근에 대로가 존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을 경우 등은 영업지역 300m보다 줄어들 수 있음 |

※ 예외사항(예외사항의 경우 300m보다 줄어들 수 있다.)

- 1) 철도 또는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 2)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쇼핑몰 등)의 경우

##### 3)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1)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 |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

|                                                                                                                                                                                       |                                                                |                                                                                                                                                           |
|---------------------------------------------------------------------------------------------------------------------------------------------------------------------------------------|----------------------------------------------------------------|-----------------------------------------------------------------------------------------------------------------------------------------------------------|
|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4)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 또는 별도 협의 후 합의 →재조정 |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회신이 있는 경우 영업지역 재조정.<br>만약, 가맹본부의 변경(안)에 가맹점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거쳐 합의함. |
|---------------------------------------------------------------------------------------------------------------------------------------------------------------------------------------|----------------------------------------------------------------|-----------------------------------------------------------------------------------------------------------------------------------------------------------|

#### 4)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 1)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br>2)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br>3)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이렉트 커피 생활카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

#### 5)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6)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7)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4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4 | -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1 ]년입니다.

## 2)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기간<br>(계약기간 만료<br>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       |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br>(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체결<br>(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①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②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③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④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⑤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⑥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⑦최초의 가맹계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 49조 제5항 |

### 4)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 관련 계약조문 |
|----------|---------------------------------------------------------------------------------------|---------|
| 합의해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본 가맹점 개점 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52조     |

|                                                     |                                                                                                                                                                                                                                                                                                                                                                                                                                                                                                                                                                                                                                                                                                                                                                                                              |                  |
|-----------------------------------------------------|--------------------------------------------------------------------------------------------------------------------------------------------------------------------------------------------------------------------------------------------------------------------------------------------------------------------------------------------------------------------------------------------------------------------------------------------------------------------------------------------------------------------------------------------------------------------------------------------------------------------------------------------------------------------------------------------------------------------------------------------------------------------------------------------------------------|------------------|
| 2개월간의<br>기간을 두고<br>2회 이상의<br>시정요구후<br>미 시정시<br>해지가능 | 1.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영업개시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br>2.가맹점사업자가 제28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상품]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br>3.가맹점사업자가 제44조 [영업비밀 준수 의무], 제45조 [경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br>4.가맹점사업자가 제48조 [가맹점 운영상의 주요 지침]에 규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경영지도]에 따른 경영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br>5.가맹점사업자가 제54조 [영업의 양도] 제7항을 위반한 경우<br>6.가맹본부에 대한 상품 대금의 반복적인 연체 및 채무불이행의 경우<br>7.가맹점사업자가 지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br>8.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상표·서비스표 등 “갑”의 상품을 나타내는 일체의 표지를 “갑”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여 “갑”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br>9.가맹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의도가 있는 경우<br>10.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점과 동종 가맹점을 영위하거나, 그러한 가맹점의 영업에 참여하고 그 외 업무를 제휴하는 경우<br>11.가맹점사업자가 가압류/가처분(단순 채권보전인 경우 제외), 조세채납처분 등을 받은 경우<br>12.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br>13.그 외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 50조<br>제1항<br>각호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계약 해지 사유(당사의해지권)                                                                                                    | 관련 계약조문 |
|------------------------------------------------------------------------------------------------------------------------|---------|
| ①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51조 제1항 |
| ②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
| ③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④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                  |
|--------------------------------------------------------------------------------------------------------------------------------------------------------------------------------------------------------------------------------------|------------------|
|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각호               |
| ⑤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 ⑥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⑦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⑧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⑨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5)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정 사유                                                                   |                                                                      | 관련 계약조문 |
|----------------------------------------------------------------------------|----------------------------------------------------------------------|---------|
| 1)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br>2)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58조     |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 가맹본부는 계약 수정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수정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수정 요청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은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1)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양도 가능 기준                                                                                  | 양도 절차                                                                                                                 | 비 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br>-당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기준에 적합할 것(연령/적성/성격/프랜차이즈 이해도 등)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br>→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창업지원팀<br>(031-983-8141)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가능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 고                    |
|------|------------|-----------------|----------------------------------|------------------------|
| 상속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 | 당사검토→담당부서 검토→승인여부 통지→가맹계약체결→상속완료 |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br>(교육비) |
| 대리행사 | 불 가        | -               | -                                |                        |
| 업무위탁 | 불 가        | -               | -                                |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승계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 고                         |
|---------------------|-------------------------------------------------------------------------|-----------------------------|
| 커피음료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br>→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창업지원팀<br>(031-983-8141) |

## 2)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시간     | 영업 일수                                              | 비 고                         |
|-----------|----------------------------------------------------|-----------------------------|
| 일 12시간 이상 | 주 6일 이상 월 20일 이상 개장<br>(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문의: 창업지원팀<br>(031-983-8141)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할 경우, 본부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점포의 운영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부에서는 점포의 24시간 영업을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점주의 부재 시<br>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는 타 브랜드 모방의 우려로 영업장 내에 지정인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 인원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작성 후 가맹본부 직원과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 스테프실 내부는 가맹사업자 외 지정 2인(종업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가맹본사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 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br>→ 관리/감독항목 확인 | 연간 4회 내외 | 프랜차이즈<br>담당직원 |     |
| 친절도     | → 점포점검 List 작성            |          |               |     |

|       |                              |  |  |  |
|-------|------------------------------|--|--|--|
| 품질 관리 | →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br>/개선방향 구두 협의 |  |  |  |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귀하에게 공지한 점포점검List와 같은 Check List를 기준으로 가맹점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본 Check List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되며 이러한 점검의 결과는 귀하에게 설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가맹점<br>모집광고                   | 100%      | -                                                         | 광고 계획 공고-><br>가맹점의 광고참여<br>여부 결정->가맹점<br>부담액 확정 |      |
|                                   | 상품광고 +<br>브랜드광고               | 별도 협의     |                                                           |                                                 |      |
|                                   | 상품광고 +<br>브랜드광고 +<br>가맹점 모집광고 | 별도 협의     |                                                           |                                                 |      |
| 판촉행사                              | 할인행사                          | 별도 협의     |                                                           | 판촉 계획 공고-><br>가맹점의 판촉참여<br>여부 결정->가맹점<br>부담액 확정 |      |
|                                   | 증정행사                          | 별도 협의     |                                                           |                                                 |      |
|                                   | 공통 판촉 활동                      | 기획비용      | 가맹점에서<br>소요되는 판촉<br>물의 제작비용<br>및 직접 판매하<br>는 상품의 할인<br>비용 |                                                 |      |
|                                   | 기타 개별행사                       |           | 100%                                                      | 가맹본부에 판촉계<br>획안 발송->본사<br>승인여부 결정               |      |
| 할인카드/<br>멤버십/<br>/O2O마케팅<br>제휴서비스 | 제휴행사                          | 진행별 별도 협의 |                                                           |                                                 | 별도공지 |

### 2)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조문 |
|-------------------------------------------------------------------------------------------------------------------------------------------------------------------------------------|---------|
| ⑩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리플렛, 카탈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다이렉트커피 생활 카페』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40조     |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조문 |
|------------------------------------------------------------------------------------------------------------------------------------------------------------------------------------------------------------------------------------------------------------------------------------------------------------------------------------------------------------------------------------------------|---------|
| ①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를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br>②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계 및 도면디자인,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매뉴얼, 레시피, 구입강제품목 내역,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과 공급가격 결정기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인쇄, 촬영,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br>③가맹점사업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원에 의한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44조     |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관련 계약조문 |
|------------------------------------------------------------------------------------------------------------------------------------------------------|---------|
| ①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보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br>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후 6개월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 | 56조     |

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金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후 6개월 이후 가맹본부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서 해지·중단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가맹본부가 공급한 물품대금 평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존하는 계약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 제30조[구입강제품목의 지정]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입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서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매출액 대비 평균적 구입강제품목 소요량을 산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사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⑤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 제44조[영업비밀 유지의무]와 제45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서 金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해지 및 종료 시 본 계약서 제53조[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제1항 내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金200,000원의 지체배상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⑨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                                                                  | 7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인터넷 문의 접수<br>-간단한 정보제공 및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                         | D-70            | -    |
| 창업설명회<br>및 개별상담 | -사업전반 설명<br>-필요시 개별상담 진행<br>(구체적인 지역/점포가 있는 경우)                  | D-70            | -    |
| 물건 소싱           | -부동산 방문/물건 소싱<br>-물건 방문/상권확인 등                                   | D-65~49         | -    |
| 물건접수/방문         | -가맹희망자가 제시하는 물건 접수/사전분석<br>-물건방문 및 당사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br>-승인여부 내부 결정 | D-65~49         | -    |
| 최종 협의           | -최종 협의 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D-65~49         | -    |
| 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br>14일이후 계약 체결                             | D-49            | -    |
| 가맹비등 외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비등/로열티/이행보증금 예치                                         | D-49            | -    |
| 종업원 모집/채용       | -적정 종업원수 협의<br>-종업원 모집/채용                                        | D-49~11         | -    |
| 점포 실측/설계        |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 선정<br>-점포 실측/설계/공사비등 비용 산출                          | D-49~46         | -    |
| 인허가 문의/취득       | -인허가 기관 방문/협의<br>-인허가 취득                                         | D-49~46         | -    |
| 도면 협의 등         | -도면 협의 및 승인                                                      | D-46            |      |
| 인테리어 등 공사       | -공사 실시<br>(인테리어, 주방 설비/집기, 전산설비 등)                               | D-45~1<br>(45일) | -    |
| 교육 실시           | -점포 이론/실습교육 실시<br>-Test 및 승인 (or 재교육)                            | D-11~1<br>(10일) | -    |
| 개점              | -개점 및 영업시작                                                       | D-day           |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기업은행에 인터넷으로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자료를 드려 안내합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                                                                                                                                                                                                                                                                                                                                                                                |
|--------------------|--------------------------------------------------------------------------------------------------------------------------------------------------------------------------------------------------------------------------------------------------------------------------------------------------------------------------------------------------------------------------------|
| 점포환경<br>개선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5년: 최근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경과한 시점)                                                                                                                                                                                                                                           |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br>-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br>부담<br>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br>-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
| 지급절차               | - 공사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br>-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br>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br>-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br>-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br>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90일내,30% /2차: 1차지급일로부터 60일내,30% /3차: 2차지급일로부터 60일내,40%) |
| 협의절차               | -가맹본부의 권유(서면발송) → 가맹점동의(서면회신) → 환경개선 시행<br>-가맹점 신청 → 가맹본부 검토 및 승인(서면 승인) → 환경개선 시행                                                                                                                                                                                                                                                                                             |
| 비용부담<br>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
| 비고                 |                                                                                                                                                                                                                                                                                                                                                                                |

## 2. 판촉진행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맹본부 요청 시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
| 대상 및 내용 |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 고객관리,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상품,설비(집기).판매촉진,고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 절차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지도내용, 기간,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설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지도 후[14]일 이내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비용부담    |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사업자 부담<br>(로열티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비고      | 문의: 창업지원팀<br>(031-983-8141)                                                                                                                | 문의: 창업지원팀<br>(031-983-8141)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어떠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지고 조달하셔야 합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당사는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브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 내용                          | 교육 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교육    | 매장운영 관리교육<br>기본레시피 교육          | 본사 교육장 OR<br>오픈예정 매장 | 가맹계약 체결 후<br>1개월 이내 | 필수 |
| 실전교육    | 본사정책 교육<br>기기사용법 교육<br>운영실무 교육 | 오픈예정 매장              | 오픈 전                | 필수 |
| 리허설교육   | 전체적인 운영실무 교육                   | 오픈예정 매장              | 오픈 전                | 필수 |
| 보수교육    | 신 메뉴 및 지도필요부분                  | 가맹점 방문               | 반기 1회               | 필수 |
| 양수매장 교육 | 신규교육 및<br>실전교육 동일              | 본사 교육장<br>양수 매장      | 양도양수계약<br>체결 시      | 필수 |
| 특별교육    | 매장운영<br>CS교육                   | 본사 교육장               | 필요 시                | 선택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교육  | 약 1주 | 최초 교육비 | 최초 계약 후<br>1개월 이내<br>이수 |
| 실전교육  | 약 1주 | 실비     |                         |
| 리허설교육 | 약 1주 | 실비     |                         |

|         |                |                                                                        |                   |
|---------|----------------|------------------------------------------------------------------------|-------------------|
| 보수교육    | 약 1일           | 실비                                                                     | 반기 1회             |
| 특별교육    | 약 2일           | 실비                                                                     |                   |
| 양수매장 교육 | 15시간<br>(신규교육) | 최대 2인 / 1일 기준<br>165,000원(부가세포함 / 서울·경기 기준)<br>275,000원(부가세포함 / 지방 기준) | 양수도 계약 시<br>필수 이수 |

※ 자격과정은 가맹점주 선택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책정된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여 진행합니다.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3조 제1항 |
| 교육·훈련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9조 제1항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단위 : 일) | 비고 |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 | 비고 |
|---------------------|----|
|                     |    |

## <정보공개서 내용문의>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창업지원팀(031-983-81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공개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당사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에 대한 현황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 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 순번 | 품목(단위) | 공급가격 |     | 구분 |
|----|--------|------|-----|----|
|    |        | 상한가  | 하한가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별첨4> [다이렉트커피 생활카페] 판매상품 리스트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핫<br>음료 | 아메리카노         | HOT 디카페인아메리카노(덜뜨겁게)            | 2,900 |    |
|         |               | HOT 디카페인아메리카노(뜨겁게)             | 2,9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1.5 샷)(덜뜨겁게)       | 1,5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1.5 샷)(뜨겁게)        | 1,5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2 샷)(덜뜨겁게)         | 1,7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2 샷)(뜨겁게)          | 1,7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3 샷)(덜뜨겁게)         | 2,200 |    |
|         |               | HOT 일반아메리카노(3 샷)(뜨겁게)          | 2,2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덜뜨겁게)     | 2,7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뜨겁게)      | 2,7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덜뜨겁게)       | 2,9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뜨겁게)        | 2,9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덜뜨겁게)       | 3,400 |    |
|         |               | HOT 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뜨겁게)        | 3,400 |    |
|         | 헤이즐넛<br>아메리카노 | HOT 헤이즐넛디카페인아메리카노(덜뜨겁게)        | 3,400 |    |
|         |               | HOT 헤이즐넛디카페인아메리카노(뜨겁게)         | 3,4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1.5 샷)(덜뜨겁게)   | 2,0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1.5 샷)(뜨겁게)    | 2,0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2 샷)(덜뜨겁게)     | 2,2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2 샷)(뜨겁게)      | 2,2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3 샷)(덜뜨겁게)     | 2,7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3 샷)(뜨겁게)      | 2,7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덜뜨겁게) | 3,2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뜨겁게)  | 3,2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덜뜨겁게)   | 3,4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뜨겁게)    | 3,4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덜뜨겁게)   | 3,9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뜨겁게)    | 3,900 |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핫 음료 | 카페라떼   | HOT 디카페인카페라떼        | 4,100 |    |
|      |        | HOT 일반카페라떼진한우유맛     | 2,900 |    |
|      |        | HOT 일반카페라떼보통맛       | 2,900 |    |
|      |        | HOT 일반카페라떼진한커피맛     | 2,900 |    |
|      |        | HOT 프리미엄카페라떼진한우유맛   | 4,100 |    |
|      |        | HOT 프리미엄카페라떼보통맛     | 4,100 |    |
|      |        | HOT 프리미엄카페라떼진한커피맛   | 4,100 |    |
|      | 바닐라라떼  | HOT 디카페인바닐라라떼       | 4,400 |    |
|      |        | HOT 일반바닐라라떼진한우유맛    | 3,200 |    |
|      |        | HOT 일반바닐라라떼보통맛      | 3,200 |    |
|      |        | HOT 일반바닐라라떼진한커피맛    | 3,200 |    |
|      |        | HOT 프리미엄바닐라라떼진한우유맛  | 4,400 |    |
|      |        | HOT 프리미엄바닐라라떼보통맛    | 4,400 |    |
|      |        | HOT 프리미엄바닐라라떼진한커피맛  | 4,400 |    |
|      | 카라멜라떼  | HOT 디카페인카라멜라떼       | 4,400 |    |
|      |        | HOT 일반카라멜라떼진한우유맛    | 3,200 |    |
|      |        | HOT 일반카라멜라떼보통맛      | 3,200 |    |
|      |        | HOT 일반카라멜라떼진한커피맛    | 3,200 |    |
|      |        | HOT 프리미엄카라멜라떼진한우유맛  | 4,400 |    |
|      |        | HOT 프리미엄카라멜라떼보통맛    | 4,400 |    |
|      |        | HOT 프리미엄카라멜라떼진한커피맛  | 4,400 |    |
|      | 헤이즐넛라떼 | HOT 헤이즐넛디카페인라떼      | 4,4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라떼진한우유맛   | 3,2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라떼보통맛     | 3,200 |    |
|      |        | HOT 헤이즐넛일반라떼진한커피맛   | 3,2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진한우유맛 | 4,4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보통맛   | 4,400 |    |
|      |        | HOT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진한커피맛 | 4,400 |    |
|      | 카페모카   | HOT 카페모카            | 3,500 |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핫<br>음료   | 스페셜라떼                | HOT 초코라떼                 | 3,200 |    |
|           |                      | HOT 꿀밤라떼                 | 3,200 |    |
|           |                      | HOT 녹차라떼                 | 3,200 |    |
|           |                      | HOT 녹차초코라떼               | 3,500 |    |
|           |                      | HOT 얼그레이밀크티              | 3,200 |    |
|           | 핫티                   | HOT 레몬차                  | 2,500 |    |
|           |                      | HOT 레드자몽차                | 2,500 |    |
|           |                      | HOT 복숭아홍차                | 2,500 |    |
|           |                      | HOT 망고피치차(ZERO)          | 3,300 |    |
|           |                      | HOT 납작복숭아차(ZERO)         | 3,300 |    |
|           |                      | HOT 캐모마일&사과차(ZERO)       | 3,300 |    |
|           |                      | HOT 레몬블랙티                | 2,500 |    |
|           |                      | HOT 티백차                  | 2,500 |    |
| 아이스<br>음료 | 아이스<br>아메리카노         | ICE 디카페인아메리카노            | 3,200 |    |
|           |                      | ICE 일반아메리카노(1.5 샷)       | 1,700 |    |
|           |                      | ICE 일반아메리카노(2 샷)         | 2,000 |    |
|           |                      | ICE 일반아메리카노(3 샷)         | 2,500 |    |
|           |                      | ICE 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     | 3,000 |    |
|           |                      | ICE 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       | 3,200 |    |
|           |                      | ICE 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       | 3,700 |    |
|           | 아이스<br>헤이즐넛<br>아메리카노 | ICE 헤이즐넛디카페인아메리카노        | 3,7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1.5 샷)   | 2,2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2 샷)     | 2,5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아메리카노(3 샷)     | 3,0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1.5 샷) | 3,5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2 샷)   | 3,7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아메리카노(3 샷)   | 4,200 |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아이스<br>음료 | 아이스<br>카페라떼   | ICE 디카페인카페라떼        | 4,400 |    |
|           |               | ICE 일반카페라떼진한우유맛     | 3,200 |    |
|           |               | ICE 일반카페라떼보통맛       | 3,200 |    |
|           |               | ICE 일반카페라떼진한커피맛     | 3,200 |    |
|           |               | ICE 프리미엄카페라떼진한우유맛   | 4,400 |    |
|           |               | ICE 프리미엄카페라떼보통맛     | 4,400 |    |
|           |               | ICE 프리미엄카페라떼진한커피맛   | 4,400 |    |
|           | 아이스<br>바닐라라떼  | ICE 디카페인바닐라라떼       | 4,700 |    |
|           |               | ICE 일반바닐라라떼진한우유맛    | 3,500 |    |
|           |               | ICE 일반바닐라라떼보통맛      | 3,500 |    |
|           |               | ICE 일반바닐라라떼진한커피맛    | 3,500 |    |
|           |               | ICE 프리미엄바닐라라떼진한우유맛  | 4,700 |    |
|           |               | ICE 프리미엄바닐라라떼보통맛    | 4,700 |    |
|           |               | ICE 프리미엄바닐라라떼진한커피맛  | 4,700 |    |
|           | 아이스<br>카라멜라떼  | ICE 디카페인카라멜라떼       | 4,700 |    |
|           |               | ICE 일반카라멜라떼진한우유맛    | 3,500 |    |
|           |               | ICE 일반카라멜라떼보통맛      | 3,500 |    |
|           |               | ICE 일반카라멜라떼진한커피맛    | 3,500 |    |
|           |               | ICE 프리미엄카라멜라떼진한우유맛  | 4,700 |    |
|           |               | ICE 프리미엄카라멜라떼보통맛    | 4,700 |    |
|           |               | ICE 프리미엄카라멜라떼진한커피맛  | 4,700 |    |
|           | 아이스<br>헤이즐넛라떼 | ICE 헤이즐넛디카페인라떼      | 4,7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라떼진한우유맛   | 3,5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라떼보통맛     | 3,500 |    |
|           |               | ICE 헤이즐넛일반라떼진한커피맛   | 3,5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진한우유맛 | 4,7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보통맛   | 4,700 |    |
|           |               | ICE 헤이즐넛프리미엄라떼진한커피맛 | 4,700 |    |
|           | 아이스<br>카페모카   | ICE 카페모카            | 3,800 |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아이스<br>음료 | 아이스<br>스페셜라떼 | ICE 초코라떼       | 3,500 |    |
|           |              | ICE 꿀밤라떼       | 3,500 |    |
|           |              | ICE 녹차라떼       | 3,500 |    |
|           |              | ICE 녹차초코라떼     | 3,800 |    |
|           |              | ICE 얼그레이밀크티    | 3,500 |    |
|           |              | ICE 딸기라떼       | 3,500 |    |
|           |              | ICE 딸기초코라떼     | 3,800 |    |
|           |              | ICE 레몬요거떼      | 3,500 |    |
|           |              | ICE 자몽요거떼      | 3,500 |    |
|           |              | ICE 샤인머스켓요거떼   | 3,500 |    |
|           |              | ICE 복숭아요거떼     | 3,500 |    |
|           | 아샷추          | ICE 아샷추(레몬)    | 3,100 |    |
|           |              | ICE 아샷추(레드자몽)  | 3,100 |    |
|           |              | ICE 아샷추(복숭아)   | 3,100 |    |
|           |              | ICE 아샷추(샤인머스켓) | 3,100 |    |
|           |              | ICE 아샷추(딸기)    | 3,100 |    |
|           |              | ICE 아샷추(체리)    | 3,100 |    |
|           |              | ICE 아샷추(블루베리)  | 3,100 |    |
|           |              | ICE 아샷추(사과)    | 3,100 |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종류        |      | 메뉴명                   | 판매가격  | 비고 |
|-----------|------|-----------------------|-------|----|
| 아이스<br>음료 | 아이스티 | ICE 레몬아이스티            | 2,800 |    |
|           |      | ICE 레드자몽아이스티          | 2,800 |    |
|           |      | ICE 복숭아아이스티           | 2,800 |    |
|           |      | ICE 샤인머스켓아이스티         | 2,800 |    |
|           |      | ICE 망고피치아이스티(ZERO)    | 3,500 |    |
|           |      | ICE 납작복숭아아이스티(ZERO)   | 3,500 |    |
|           |      | ICE 캐모마일&사과아이스티(ZERO) | 3,500 |    |
|           |      | ICE 딸기아이스티            | 2,800 |    |
|           |      | ICE 체리아이스티            | 2,800 |    |
|           |      | ICE 블루베리아이스티          | 2,800 |    |
|           |      | ICE 사과아이스티            | 2,800 |    |
|           |      | ICE 에너지드링크(무탄산)       | 2,800 |    |
|           |      | ICE 레몬블랙티             | 2,800 |    |
|           |      | ICE 티백차               | 2,800 |    |
|           | 에이드  | ICE 레몬에이드             | 2,900 |    |
|           |      | ICE 레드자몽에이드           | 2,900 |    |
|           |      | ICE 샤인머스켓에이드          | 2,900 |    |
|           |      | ICE 복숭아에이드            | 2,900 |    |
|           |      | ICE 망고피치에이드(ZERO)     | 3,600 |    |
|           |      | ICE 납작복숭아에이드(ZERO)    | 3,600 |    |
|           |      | ICE 캐모마일&사과에이드(ZERO)  | 3,600 |    |
|           |      | ICE 딸기에이드             | 2,900 |    |
|           |      | ICE 체리에이드             | 2,900 |    |
|           |      | ICE 블루베리에이드           | 2,900 |    |
|           |      | ICE 사과에이드             | 2,900 |    |
|           |      | ICE 에너지드링크(탄산)        | 2,900 |    |
|           |      | ICE 레몬블랙에이드           | 2,900 |    |
|           | 기타   | ICE 탄산수(얼음포함)         | 900   |    |
|           |      | ICE 얼음물               | 700   |    |
|           |      | HOT 뜨거운물              | 500   |    |
|           |      | ICE 얼음컵               | 600   |    |

※ 상기의 판매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 원가상승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판매가격 변경 시 물류배송 전 서면 안내합니다.  
 ※ 판매 가격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사업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레시피 조절시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